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공설묘지 사용자의 범위 규정 중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 부부를 함께 모실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의 여론에 따라 시설의 현황 및 장기적인 수급계획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가 가능한 봉안담에 부부를 함께 안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구를 수정 명확히 함 (안 제10조 1, 2)

나. 사망하여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의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5 신설)

다. 사망하여 안치되는 자의 70세 이상된 생존 배우자는 인접 봉안담을 사전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6 신설)

라. 제10조 5호를 7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11.6.3. ~ 6.24. (21일간)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연고자(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을 “사람의 연고자(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로 사망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 자

제10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망하여 봉안담에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
6. 사망하여 봉안담에 안치되는 자의 70세 이상 된 배우자가 인접한 봉안담을 사전에 임대하는 경우.

제10조제7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p>제10조(사용자의 범위) 공설장사 시설을 사용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p> <p>1.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 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u>연고자(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u></p> <p>2. 타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u>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자</u></p> <p>3. · 4.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5. <u>기타</u>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토지 기부채납자 등)</p>	<p>제10조(사용자의 범위) ----- ----- ----- -----.</p> <p>1. ----- ----- ----- <u>사람</u>의 <u>연고자(다만, 연고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함)로 사망한 자.</u></p> <p>2. <u>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평창군공설묘지에 가족(직계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자</u></p> <p>3. · 4. (현행과 같음)</p> <p>5. <u>사망하여 봉안담에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하는 경우.</u></p> <p>6. <u>사망하여 봉안담에 안치되는 자의 70세 이상 된 배우자가 인접한 봉안담을 사전에 임대하는 경우.</u></p> <p>7. <u>그 밖에</u> ----- ----- -----</p>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1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④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